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
2025. 6. 24(화) 10:00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97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결산개요
- 나. 세입·세출의 결산
- 다. 재무제표
- 라. 성과보고서
- 마. 결산서 첨부서류

IV.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150조(결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 관련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

V. 검토내용

1. 금천구 결산 총괄

가. 2024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888,652,338,700	907,445,806,328	759,524,787,697	147,921,018,631
일반회계	854,179,153,590	872,655,866,005	740,177,300,067	132,478,565,938
특별회계	34,473,185,110	34,789,940,323	19,347,487,630	15,442,452,693

회 계 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20,981,493,340	26,989,299,570	880,535,800	8,731,192,917	13,075,040	-	90,325,421,964
일반회계	20,261,493,340	25,570,176,570	880,535,800	6,978,499,197	13,075,040	-	78,774,785,991
특별회계	720,000,000	1,419,123,000	-	1,752,693,720	-	-	11,550,635,973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07,445,806,328원으로 예산현액 888,652,338,700원보다 18,793,467,628원이 더 수납됨.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의 83.6%인 759,524,787,697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7,921,018,631원임.

이 중 명시이월비 20,981,493,340원, 사고이월비 26,989,299,570원과 계속비이월 880,535,80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8,744,267,957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 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0,325,421,964원 임.

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계(㉗=㉔+㉕)	초과세입금(㉔)	집행잔액(㉕)	비 고
합 계	90,325,421,964	18,793,467,628	71,531,954,336	
일 반 회 계	78,774,785,991	18,476,712,415	60,298,073,576	
특 별 회 계	11,550,635,973	316,755,213	11,233,880,760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90,325,421,964원으로 세입결산의 초과세입금(18,793,467,628원)과 세출결산의 실제 집행잔액(71,531,954,336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의 잉여금 처리)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재원으로 편성 가능함.

다.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30,303,578,000	559,838,000	530,251,130	-	29,586,870
일 반 회 계	30,226,541,000	559,838,000	530,251,130	-	29,586,870
특 별 회 계	77,037,000	-	-	-	-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0,303,578,000원으로서

전년도 48,431,748,000원보다 18,128,170,000원 감소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사업 외 7건 559,83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30,251,13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29,586,87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라.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41,506,931,619	864,137,552	9,354,322,108	8,490,184,556	42,371,069,171
남북교류협력기금	205,886,640	-39,557,760	8,889,700	48,447,460	166,328,880
고향사랑기금	-	115,413,680	115,413,680	-	115,413,680
재난관리기금	5,829,497,642	136,071,078	1,337,602,208	1,201,531,130	5,965,568,7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542,966,126	952,368,579	952,368,579	-	21,495,334,705
중소기업육성기금	5,058,508,616	-69,296,188	4,934,542,682	5,003,838,870	4,989,212,428
청년미래기금	2,123,589,038	-5,255,379	106,027,621	111,283,000	2,118,333,659
자활기금	1,100,495,516	-13,395,635	196,604,365	210,000,000	1,087,099,881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	214,594,384	262,702,384	48,108,000	214,594,384
노인복지기금	351,942,060	13,582,890	22,438,890	8,856,000	365,524,950
양성평등기금	429,727,593	-16,151,370	21,207,190	37,358,560	413,576,223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471,434,675	7,441,810	30,569,210	23,127,400	478,876,485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47,707,073	39,997,840	56,061,066	16,063,226	387,704,913
옥외광고발전기금	1,000,736,120	44,726,864	123,879,204	79,152,340	1,045,462,984
도로굴착복구기금	3,177,066,730	-494,418,037	1,091,948,553	1,586,366,590	2,682,648,693
식품진흥기금	867,373,790	-21,985,204	94,066,776	116,051,980	845,388,586

본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말 41,506,931,61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9,354,322,108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8,490,184,556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2,371,069,171원임

2. 기획경제국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B/A)
계	489,007,445,590	525,195,585,125	508,597,189,195	96.84%
기 획 예 산 과	343,657,025,590	360,938,827,125	360,938,827,125	100.00%
지 역 경 제 과	2,999,855,000	3,073,538,550	3,031,318,810	98.63%
일 자리 청 년 과	4,051,076,000	4,301,591,170	4,301,591,170	100.00%
재 무 과	9,144,000,000	10,046,218,910	10,043,044,160	99.97%
세 무 1 과	126,387,204,000	143,330,494,960	127,479,697,270	88.94%
세 무 2 과	2,768,285,000	3,504,914,410	2,802,710,660	79.97%

- 202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현액은 4,890억 744만 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51억 9,558만 5천원, 세입결산액은 5,085억 9,718만 9천원으로 징수율은 96.84%임.

나. 세출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비율(%)
계	80,536,466,060	33,952,862,439	10,939,435,770	478,329,710	35,165,838,141	43.66
기획예산과	39,119,088,000	8,656,611,799	30,192,430	0	30,432,283,771	77.79
지경제과	30,209,626,960	15,462,751,765	10,874,713,340	110,117,060	3,762,044,795	12.45
일자리 청년과	9,630,367,100	8,474,788,125	34,530,000	364,306,600	756,742,375	7.86
재무과	499,414,000	451,929,720	0	0	47,484,280	9.51
세무1과	451,068,000	377,789,170	0	3,906,050	69,372,780	15.38
세무2과	626,902,000	528,991,860	0	0	97,910,140	15.62

○ 202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 예산현액은 805억 3,646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339억 5,286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9억 3,943만 5천원, 보조금반납금은 4억 7,832만 9천원, 집행잔액은 351억 6,583만 8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43.66%임.

1) 다음연도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단위 :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129,370,000	0	0	129,370,000	
지경제과	남문시장 통행로 보행환경 개선(전환사업)	30,000,000	0	0	30,000,000	(연도 내 지출불가) '25년 5월 남문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사업 완료 후 추진 예정 인 사업으로 연도 내 지출불가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지역 경제과	남문시장 LED 홍보 전광판 설치(전환사업)	99,370,000	0	0	99,370,000	(연도 내 지출불가) '25년 5월 남문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사업 완료 후 추진 예정 인 사업으로 연도 내 지출불가

○ 기획경제국 명시이월사업은 2건, 1억 2,937만원임.

<사고이월사업>

(단위 :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21,422,224,660	20,922,535,510	8,109,590,470	9,929,529,970	
기획 예산과	기관공통 운영비지원	160,000,000	104,913,530	74,721,100	30,192,430	구정운영 성과분석 용역 추가 협약 및 활체어리프트 개조 소요기간 연기
지역 경제과	그린푸줏간 조성 (시설현대화)	10,855,557,660	10,701,267,380	6,541,089,880	1,300,321,110	'2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이월
	그린푸줏간 조성 (주차환경개선)	4,827,317,000	4,804,989,000	957,552,130	3,624,467,230	'2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이월
	그린푸줏간 조성 (상권활성화)	3,452,000,000	3,452,000,000	0	3,452,000,000	'2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이월
	남문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1,710,000,000	1,509,086,140	373,845,900	1,334,651,200	'24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 어 10월 공사 발주하여 '25년 5월 준공 예정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233,200,000	169,298,000	15,930,000	153,368,000	'24.11.20 착공하여 '25.01.18 준공예정인 사업
일자리 청년과	미래직업 체험과 조성 및 운영	184,150,000	180,981,460	146,451,460	34,530,000	미래직업체험관 개관시기 변 동으로 계약기간 4개월 연장

○ 기획경제국 사고이월사업은 7건 99억 2,952만 9천원임.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2,800,000,000	1,919,464,200	1,919,464,200	880,535,800	
지역 경제과	은행나 고객편의 시설립	2,800,000,000	1,919,464,200	1,919,464,200	880,535,800	'24년 9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6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추진

○ 기획경제국 계속비이월 사업은 1건 8억 8,053만 5천원임.

2) 예산전용현황

(단위 : 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사유
				감액	증액	
기획경제국			11,000,000	500,000	500,000	
기획 예산과	구의회 협력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1,000,000	500,000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4년 예산 편성 후 개정(2023.12.14)됨에 따라 주민공청회 개최를 위한 예산 확보
	구의회 협력 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500,000	

○ 기획경제국 예산 전용은 1건, 50만원임.

3) 집행잔액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율 (B/A)	사유별					
				보조 정산 잔액	금 차	찰 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 잔	출 액
계	80,536,466,060	35,165,838,141	43.66	527,199,250	34,354,790	51,158,800	4,880,502,301	5,920,000	
기획예산과	39,119,088,000	30,432,283,771	77.79	29,666,703,000 (↑예비비)	987,690	45,600,000	716,553,081	2,440,000	
지역경제과	30,209,626,960	3,762,044,795	12.45	366,726,930	9,597,700	5,558,800	3,379,321,365	840,000	
일 차 리 과	9,630,367,100	756,742,375	7.86	156,566,270	22,791,000	0	576,190,105	1,195,000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율 (B/A)	사유별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 차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 잔액	예비비 감액
재무과	499,414,000	47,484,280	9.51	0	471,000	0	46,648,280	365,000
세무1과	451,068,000	69,372,780	15.38	3,906,050	0	0	65,011,730	455,000
세무2과	626,902,000	97,910,140	15.62	0	507,400	0	96,777,740	625,000

- 202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집행잔액은 351억 6,583만 8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3.66%임.
-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5억 2,719만 9천원, 낙찰차액이 3,435만 4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115만 8천원, 지출잔액 48억 8,050만 2천원, 예비비 296억 6,667만 3천원임.

다. 기금결산현황

(단위 : 원)

구분	부서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27,725,063,780	877,817,012	5,992,938,882	5,115,121,870	28,602,880,79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20,542,966,126	952,368,579	952,368,579	0	21,495,334,705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역경제과	5,058,508,616	-69,296,188	4,934,542,682	5,003,838,870	4,989,212,428
청년미래 기금	일자리청년과	2,123,589,038	-5,255,379	106,027,621	111,283,000	2,118,333,659

- 202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자리청년과 청년미래기금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59억 9,293만 8천원이며 사용액은 51억 1,512만 1천원으로 최종 2024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86억 288만원임.

라. 예비비 결산현황

- 202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음

3. 검토의견

- 본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사후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음으로써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5년평균 증가율을 보면 세입예산은 2.1% 세출예산은 2.6%로 세입이 세출보다 0.5% 적으며,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은 7.8%로 작년 대비 감소함.
- 2024년도 초과세입금은 187억 9,300만원으로 초과세입 과다 발생은 매년 반복되고 있음.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초과세입의 과다발생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획경제국의 예산 전용은 전년도에 비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 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감소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도 예산 성립 후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증감 조정 후 집행해야 할 것임.
- 금천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¹⁾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수입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으로, 가용 자원 활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103.6%에서 당해 연도 102%로 1.6% 하향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7.8%에서 97.7%로 하향되었음.
- 세수입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저하되므로 지방세 징수율이 높은 지자체로 거듭나도록 체납 징수 대책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 기획경제국 세출결산 내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붙임 : 관계 법령 1부. 끝.

1) 재정자립도 : 자체세입/세입합계, 재정자주도 : (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세입합계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4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08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